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204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redacted]시 B 대 563.3㎡에 관한 취득세 30,455,100원, 지방교육세 2,577,510원, 농어촌특별세 1,291,210원 합계 34,328,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30. [redacted]시 B 대 5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85,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26,9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1)]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10.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 10. 25. 위 건물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C'라는 명칭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2. 이 사건 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과세예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1) 당초 피고는 2017. 12. 1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지방세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조건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0,455,100원, 지방교육세 2,577,510원, 농어촌특별세 1,291,21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34,328,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정한 취지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및 인적 조건, 현황 및 목적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지방세 감면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신고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 2018. 10. 25.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요양기관을 설치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19. 11. 29. 이 사건 요양기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변경신고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11. 3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2018. 11. 30.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성격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고 위 각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노인복지법 제32조 내지 제39조). 이 사건 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그 설치 근거가 다르다. 또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은 각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정·설치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에 관하여 각 규정하면서, 각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정·설치되는 경우 서로의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정·설치된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요양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위와 같은 급여를 제공할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한 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및 인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관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반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표10이 정한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제2조 제1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무·회계 등에 있어서 위 법이 적용되어 위 법에 따라 지도·감독 등을 받게 되지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운영방법, 관리·감독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면서 제32조를 삭제하였는데, 개정이유에는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29

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4.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